

대구직할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제정(안) 심사보고서

1992. 12. 22
사회·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달서구청장
- 나. 제출일자 : 92. 9. 7
- 다. 회부일자 : 92. 9. 9
- 라. 상정일자 : 92. 9. 17(유보의결), 92. 11. 7(유보의결)
- 마. 재상정일자 : 92. 12. 22

2. 제안설명 : 생략

3. 전문위원 검토보고 : 생략

4. 토론요지

당 위원회에서는 2번이나 보류되었던 제정 조례안중 지금까지 토론의 대상이었던 제10조 제3항의 내용 말미에 단서조항으로 "각 업종별 대행업체는 2개이상 허가해야한다"를 추가 삽입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나 업체에서는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구청에서는 철저한 지도·감독을 확행할것을 촉구하고 수정조례안을 가결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가. 찬성자 : 김정해 위원장, 손영일 간사, 박이찬 위원, 하종수 위원, 김영수 위원, 이기도(12명) 위원, 박용갑 위원, 박병기 위원, 이종택 위원, 권춘갑 위원, 전부진 위원, 박양현 위원

나. 반대자 : 없음

(단, 박용갑 위원은 조례안 제10조 제3항에 단서조항 추가삽입을 하지는 의견 제시)

5. 수정안 요지

- 제정조례(안)과 같이 제4조 제2항 제4호“수집, 운반 흡인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확보”를 “수집, 운반 흡인식 차량을 확보하고 용량표시를 주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탈취시설 확보”로 수정
- 제정조례(안) 제10조 제2항 제2호 “허가기간 : 3년”을 “허가기간 : 2년”으로 수정

6.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7. 첨부 : 제정조례(안) 1부.

대구직할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제정(안)

대구직할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32조, 제34조, 제35조, 제4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와 같다.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안의 분뇨 및 축산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뇨 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공동처리 시설을 설치하여 이를유지 관리하고 처리방법을 개선하는등 분뇨 및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분뇨의 처리

제4조(분뇨의 처리) ①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의 분뇨를 수집, 운반, 처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영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분뇨수집 운반또는 정화조등의 청소대행 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구역 및 추정 청소량
2. 대행기간
3.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4. 수집, 운반 흡인식 차량을 확보하고 용량시설을 주민이 직접 확인 할 수 있도록하며 탈취시설 확보
5.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자는 법, 영, 규칙과 이 조례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구청장의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분뇨수집의무 제외지역) ① 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분뇨의 수집, 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은 분뇨수집 의무 제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수집, 운반 의무 제외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단, 다수인이 모이는 국립공원등 관광지로서 특히 청결의 유지를 필요로 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 1. 가구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 2. 차량의 출입등이 어려워 분뇨의 수집, 운반이 거의 불가능한 지역

제6조(분뇨처리시설 처리수수료의 징수방법 등) 구청장은 법 제19조 제6항에서 규정한 분뇨처리시설 처리수수료를 대구직할시 분뇨처리시설 처리수수료 징수등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허가한 분뇨관련영업자로 하여금 징수 대행케하여 시에 납부하게 하여야한다.

제3장 축산폐수의 처리

제7조(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의 비용부담)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에서 처리되는 축산폐수를 배출하는 자로부터 징수할수 있는 당해시설의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축산폐수를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거나 당해시설을 설치, 운영하는자에게 그 처리를 위탁 하므로써 축산업자가 받는 이익의 범위안에서 축산업자가 배출하는 축산폐수의 양, 성상, 오염물질의 농도, 기타 배출방법 및 형태등을 고려하여 처리비용의 징수규정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그 지역안에서는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축산법 제2조에 규정된 가축으로 한다. 다만 애완용, 방범용 또는 실험용 등으로서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가축사육 제한에 관하여는 구청장은 가축사육이 금지되는 일정한 지역은 미리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지역에서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⑤ 제4항에서 정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육금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가축사육의 허가 등) ①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육장을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등본
2. 사육지 위치도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사육장의 상태가 인근주민의 보건위생 및 주거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관할 보건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가축사육 허가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고 그 허가증을 교부받은 자는 이를 축사의 잘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가축사육 허가를 받은자는 그 축사를 청결히 유지 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물 등으로 인근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⑤ 가축사육의 허가를 받은자가 제2항,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구청장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분뇨관련영업의 허가등

제10조(분뇨관련영업) 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

1. 영업구역 : 달서구 관할 (동)
2. 허가기간 : 2년 (변경허가시는 잔여기간)

③ 구청장은 관할구역의 분뇨발생량과 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자의 지역 분포등을 고려하여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④ 허가에 따른 기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분뇨관련영업 요금) 법 제35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 영업요금은 다음 각호 1과 같다.

1. 분뇨수집, 운반요금 : 18ℓ당 214원 (분뇨처리시설 수수료 1ℓ당 1원포함)

2. 정화조 청소요금

가. 기본요금 : 0.75㎡당 12,350원

나. 초과요금 : 0.75㎡당 초과시 0.1㎡마다 893원 가산

“주” 용량기준은 개별정화조 용량을 말하며 조내 청소비 및 분뇨처리시설 수수료 (1ℓ당 1원)가 포함된 요금임.

제 5 장 보 칙

제 12 조(보고, 검사) 구청장은 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재활용 하는자,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 영업자의 처리실적을 보고 받을수 있으며, 당해시설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 장비등을 검사하게 할 규정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 13 조(과태료 징수절차) 법 제58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시 별표1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징수하며, 기타 필요한 과태료의 징수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 14 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2 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행정처분등 시행중에 있는 사항은 종전의 대구직할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대구직할시 폐기물 수집수수료등 징수조례, 대구직할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

제 3 조(분뇨수집 및 정화조 청소요금의 경과조치) 대구직할시 폐기물 수집수수료등 징수조례 제2 조 제1항 1호의 별표1중 분뇨수거료와 3호의 별표2의 오수 및 분뇨정화조 청소수수료액표는 자치구의 관련 조례가 공포시행 될때까지 대구직할시 폐기물 수집수수료등 징수조례에 의하며, 달서구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의 분뇨관련 영업요금으로 본다.

[별표#1]

과 태 료 부 과 기 준

부 과 대 상	부과금액 (천원)		
	1 차 위 반	2 차 위 반	3 차 위반이후
1.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 정화시설(신고대상)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한자 (법 제5조)			
가. 오수정화시설			
(1) 1일처리용량이 100 m^3 미만인 오수정화시설			
(가) 방류수수질기준 50%미만을 초과한 경우	100	200	300
(나) 방류수수질기준 50%이상 100%미만을 초과한 경우	300	400	500
(다) 방류수수질기준 100%이상 200%미만을 초과한 경우	500	600	700
(라) 방류수수질기준 200%이상을 초과한 경우	700	800	1,000
(2) 1일 처리용량 100 m^3 이상인 오수정화시설			
(가) 방류수수질기준 50%미만을 초과한 경우	200	300	400
(나) 방류수수질기준 50%이상 100%미만을 초과한 경우	400	500	600
(다) 방류수수질기준 100%이상 200%미만을 초과한 경우	600	700	800
(라) 방류수수질기준 200%이상을 초과한 경우	800	900	1,000

부 과 대 상	부과금액 (천원)		
	1 차 위 반	2 차 위 반	3 차 위반이후
나. 정화조			
(1) 처리용량 10㎥미만인 정화조의 경우	100	200	300
(2) 처리용량 10㎥이상인 정화조의 경우	300	400	500
다. 축산폐수 정화시설 (신고대상)			
(1) 방류수수질기준 20%미만을 초과한 경우	100	200	300
(2) 방류수수질기준 20%이상 50%미만을 초과한 경우	300	400	500
(3) 방류수수질기준 50%이상 100%미만을 초과한 경우	500	600	700
(4) 방류수수질기준 100%이상을 초과한 경우	700	800	1,000
2.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자 (법 제9조 제2항 또는 제10조 제2항)			
가. 오수정화시설의 경우	200	500	1,000
나. 정화조의 경우	100	200	500
3.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 시설을 사용한자(법 제11조 또는 제26조)			
가.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사용할 경우			
(1) 정화조, 축산폐수정화시설(신고대상)의 경우	200	200	200
(2) 오수정화시설의 경우	300	300	300

부 과 대 상	부과금액 (천원)		
	1 차 위 반	2 차 위 반	3 차 위반이후
나. 준공검사에 불합격판정을 받고도 계속 사용한 경우			
(1) 정화조, 축산폐수정화시설(신고대상)의 경우	500	500	500
(2) 오수정화시설의 경우	800	800	800
4.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신고대상)의 설치 또는 변경을 당해시설의 설계·시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자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맡긴자 (법 제13조 제1항 및 제3항, 제27조)			
가. 정화조, 축산폐수정화시설(신고대상)의 경우	500	500	500
나. 오수정화시설의 경우	800	800	800
5.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정화시설을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관리한 자 (법 제14조 제2항, 제28조 제2항)			
가. 방류수수질을 측정하지 아니하거나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 처리용량 200㎥이상 정화조 또는 1일 처리용량 200㎥이상인 오수정화시설은 반기별 1회 이상	100	200	500
(2) 1일 처리용량 5㎥이상인 축산폐수정화시설(신고대상)은 연1회 이상	100	200	500

부 과 대 상	부과금액 (천원)		
	1 차 위 반	2 차 위 반	3 차 위 반이후
나. 내부청소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 처리용량이 10㎥미만인 정화조, 축산폐수 정화시설 (신고대상)	100	300	500
(2) 처리용량이 10㎥이상인 정화조, 오수정화시설	300	500	800
다. 처리대상 인원 500인 이상인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의 방류수 소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00	500	1,000
6. 간이오수정화조의 설치명령을 위반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자 (법 제15조 제1항)	500	700	1,000
7. 변경신고를 하지아니하고 축산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한자 (법 제24조 제4항)	300	500	800
8. 영업구역, 기한 기타 필요한 조건을 위반한 분뇨관련영업자 (법 제35조 제4항)			
가. 영업구역 또는 영업기한을 위반한 경우	500	700	1,000
나. 적기에 분뇨를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천재지변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	100	300	500
9. 기준을 초과하여 요금을 받은 분뇨관련영업자 (법 제35조 제6항)	300	500	1,000
10. 기술관리인의 선임 또는 개입신고를 하지 아니한자 (법 제42조 제3항)	300	500	1,000

부 과 대 상	부과금액 (천원)		
	1 차 위 반	2 차 위 반	3 차 위 반이후
11. 기술관리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법 제43조)	500	700	1,000
12. 장부를 기록, 보존하지 아니한자 (법 제44조)	300	500	1,000
13.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자 (법 제42조 제3항)	300	500	1,000
14. 휴업, 폐업 등의 신고를 아니한 분뇨관련 영업자 (법 제45조)	300	500	1,000
15.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법 제46조 제1항)	300	500	1,000

- “주” 1.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2. 위반행위의 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3. 영업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 상속 또는 합병전에 당해영업에 행하여진 처분 (이미 경과한 처분, 처분기간이 진행중인 처분을 말한다)의 효과는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후 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4. 방류수 수질에 대한 오염물질의 농도 및 제거율의 계산은 소수점이하 첫째 자리까지로 한다.
5. 축산폐수 정화시설 (허가대상)은 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의 축산폐수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자가 설치한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말한다.